



'09년 2월 1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윤종구 기술규제대응과장, 이용현 공업연구원(509-7256)

민관공동 해외기술규제대응으로 수출문턱 낮춘다

- 민·관 공동대응으로 對인도 철강수출 차질위기 극복 -

- 최근 세계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난 9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TBT 중앙사무국이 설치된 이래 인도/인도네시아의 철강제품 강제인증도입, 에콰도르/사우디아라비아의 적합성인증서 첨부, 중국의 정보보안제품의 강제인증도입 등 곳곳에서 자국민의 안전 및 환경보호를 표명한 신규규제들이 접수되었음.
- 이러한 신규기술규제는 수출국입장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변경해야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WTO로의 통보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관련 기업들이 기술규제 변경사실을 모르고 선적, 통관이 안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음.
 - * WTO에 통보된 통보문 : 875건('06) → 1016건('07) → 1247건('08)
- 최근 중앙사무국에서 해결한 사례로 인도정부는 '09.2월부터 시행키로 한 철강제품 17개 품목에 대한 강제인증에 대해,
 - IS1786(고강도 철근과 철선) 등 3종에 대해서는 철회, IS277(아연도강판) 등 15종에 대해서는 '10.2월로 연기하는 쾌거를 이룸.
 - * IS(Indian Standard) 인도국가규격
 - 이는 지난 12월 관련 국내업체와 일본, 미국, EU 정부간 긴밀한 공조 끝에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음.

- 또한 에콰도르 수출관련 기업으로부터 수입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를 요구하는 에콰도르의 신규기술규제정보를 제공받아,
- 미국, 일본 등과 협력을 통해 당초 '08.12.1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한 규제를 '09.8.1일 시행예정으로 시행일자를 연기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음.
 - * 에콰도르는 공산품 적합성인증서 첨부규제(12.1 시행)관련, WTO 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예기간도 부여하지 않았음
- 이는 '08. 12월 선적, '09년 1월 중순 현지도착한 우리 수출기업 컨테이너가 통관이 안되고 있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얻어낸 성과로 신속한 기술규제 정보입수와 TBT 규제당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임.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기술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위해,
 - 지난 9월 TBT중앙사무국을 발족, 분산되었는 질의처의 총괄 조정 및 대외창구의 단일화를 위해 TBT 포털(www.TBT.kr) 운영을 통해 무역상기술장벽관련 수출기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간 해결된 사례는 아래와 같음.
 - 인니의 철강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도입은 해당기업이 선적후 애로 호소로 인해 해당국에 「소비자보호와 무관한 중간재로서의 자동차용·가전용 강판은 강제인증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수출판로를 유지
 - 노르웨이의 소비자제품의 18개 유해물질 사용금지관련 해당협회의 건의로 WTO/TBT위원회에서 문제제기('08.3, '08.7)후, 시정
 -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관련, 미국, 일본과 공조하여 강제인증 시행을 전면 보류(08.11)
 - 사우디 및 미국의 적합성인증서 첨부규제관련 적합성평가기관 신속 지정대응(세부내용 붙임 참조)

□ 기술표준원은 중앙사무국에서 운영중인 TBT 포탈(www.TBT.kr)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다 많은 수출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해주시기를 요청하며, 향후 정보입수채널의 다각화를 위해서 전경련, 무역협회, 코트라 등과 협의중임을 설명함.

* TBT 포탈 가입자수 : '08.12월말 420명 → '09.2.16일 현재 5363명

○ 최근 각 국가의 보호무역 추세하에 이러한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기업의 수출향방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경쟁기업보다 빠른 대응책의 수립을 통해 수출판로 확대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붙임 1. TBT 현안발생에 따른 대응사례
2. 2008년도 WTO/TBT 통보문 현황
3. 최근 TBT 현안 대응현황
4. TBT 중앙사무국 [www.TBT.kr] 소개

[붙임1] TBT 현안발생에 따른 대응사례

1. 인도의 철강제품 강제인증 개요 및 대응현황

□ 개요

- 인도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철강재 및 철강제품(규제 품목 17개)에 대한 IS(Indian Standard) 강제인증을 도입
- * 해당제품인 철강재 대인도수출은 5개업체 9.5억\$(’07) 규모
- * 인도는 소비자보호가 도입사유라고 표명하고 있으나, 저급품질의 수입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및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대응현황

- ‘08.12.5 인도정부의 철강재 및 철강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도입계획을 입수한 한국기업이 지원요청
- ‘08.12.7 외교통상부, 주인도대사관(’08.12.19)에 외교적 노력, 동향파악 및 적극적 대응요청
- ‘08.12.8 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업계대책회의, 대응방안 논의
- ‘08.12.9 일본, 미국, EU 협력채널을 통해 정보공유 및 공동협력
- ‘08.12.16 인도표준청에 WTO/TBT협정관련 동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해명과 시행연기를 요구하는 서한 송부
- ‘08. 1.16 인도 전기산업협회는 주인도대사관을 방문하고, 한국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협조를 요청
 - * 인도 전기협회에서는 인도에서 생산되지않는 한국의 방향성 전기강판이 수입되지 않을 경우 인도 전력산업에 큰 피해를 가져온다고 인도에 규제완화를 인도정부에 요청하고, 한국, 일본의 정부 및 업체도 동참하기를 요청
- ‘08. 1.18 한국·일본·EU는 인도현지에서 공동대응, 정보공유 합의
- ‘08. 2. 5 인도가 1년간 시행연기를 결정했음을 일본을 통해 정보입수
- ‘08. 2. 12 인도 정부는 관보를 통해 동건 관련 철회조치(3종) 및 시행연기를 발표함
 - * 철회분야 3종
 - IS1786 High strength deformed steel bars and wires for concrete reinforcement
 - IS1993 Cold reduced electrolytic tinplate
 - IS2062 Hot rolled low medium and high tensile structural steel(excluding bars and rods of diameter or thickness less than 6mm and structural(angle) below 50mm×50mm×6mm)

2. 에콰도르 공산품 적합성 인증평가제도 개요 및 대응현황

□ 개요

- 에콰도르는 수입 공산품에 대해 시험성적서와 적합성 인증서를 요구하는 기술규제를 ‘08.12.1에 공포하고 시행
- * 에콰도르는 제·개정규제를 WTO에 통보해야하는 WTO/TBT 의무사항을 미준수
- * ‘08 수출은 6.26억불로 최근 기기부품·자동차·타이어 등의 수출증가로 전년 대비 46.2% 증가

□ 대응현황

- ‘08.12. 1 에콰도르 정부는 수입제품에 대한 적합성인증서와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기술규제를 공포
 - * WTO/TBT 협정에 따르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기술규제는 WTO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에콰도르는 본 규제에 대해 WTO에 통보하지 않음
- ‘08.12.10 동규제 시행계획에 대해 기업으로부터 정보입수
- ‘08.12.23 주에콰도르 한국대사관과 에콰도르 WTO/TBT 질의처에 관련 기술규제자료 요청
- ‘08.12.26 세무 기술규제자료 입수 및 번역 실시
- ‘09. 1. 5 업계·정부 대책회의(12.30)를 통한 의견수렴 및 관련 기술규정 보급
- ‘09. 1. 7 우리 업계의 우려 및 질의사항을 에콰도르 규제 기관(OAE)에 전달
- ‘09. 1.14 미국, 일본 등에 에콰도르 기술규제 정보를 송부하고 대응현황을 문의
- ‘09. 1.29 주한 에콰도르 대사를 통해 우리정부의 공식 우려사항 전달
 - * WTO/TBT 협정에 따른 통보와 의견수렴절차 의무 준수 및 규제시행 유예 요청
- ‘09. 2. 2 에콰도르 정부는 동규제의 180일 시행유예를 발표
 - * 유예기간 동안에는 기존과 같이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제조자의 적합성 선언을 수용
 - * 에콰도르는 WTO 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바, WTO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새로운 적합성 평가절차를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줌

[붙임2]

2008년도 WTO/TBT 통보문 현황

○ 회원국 의무조항 : 신규기술규제 제정시 WTO로 통보해야 함

☞ WTO/TBT 협정문 관련조항

2.9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안된 기술규정의 기술적인 내용이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다르고, 동 기술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회원국은,

2.9.2 다른 회원국에게 제안된 기술규정의 목적과 합리적 이유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술규정이 적용될 상품을 통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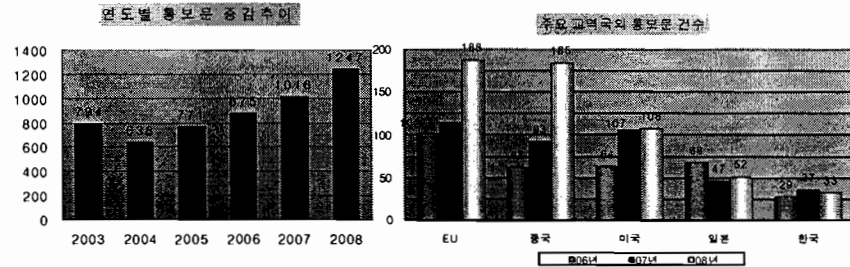
○ 기술규제 제정원칙

: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되며, 국제표준의 준수가 원칙이나,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예외를 인정

○ 2008년 통보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회원국 전체 통보문	875	1016	1247

동향 분석



- * 중국, 미국, EU의 통보가 153개 전체 회원국 통보의 30%를 차지함
- * EU 회원국 중에 EU 규정과 다르게 적용하여 별도 통보한 경우가 예년에 비해 급증함 ⇒ 프랑스(17), 핀란드(13), 독일(4) 등
- * 통보미이행 발생
: 통보의무 미이행시 여타 회원국으로부터 이의제기, 권유, WTO로의 제소 등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WTO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붙임3] 최근 TBT 현안 대응현황

① 미국 어린이용품 안전인증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8 소비자제품 안전개선 법(‘08.8)”에 근거하여 완구 등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적합성인증을 의무화하였다.

● TBT 중앙사무국은 12세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적합성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6개 KOLAS 시험기관을 지정하여(‘08.11) 對미 수출기업 지원

* 6개 KOLAS 시험기관

1.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FITI시험연구원
3. 한국화학시험연구원
4. SGS테스팅코리아 안양시험소
5. 섬유기술연구소
6. 한국의류시험연구원

② 사우디 아라비아 수출품 적합성인증서 첨부 제도

사우디는 모든 수입제품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인증서를 첨부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수출기업은 선적 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TBT 중앙사무국은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품인증서가 통용될 수 있도록 사우디와의 상호인정협약 체결(‘08.6) 및 16개 적합성인증기관을 지정(‘08.12)하여 수출애로 해결

* 16개 적합성 인증기관

1. 넵코 코리아
2. 인터텍 코리아
3.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4. 한국기기화학시험연구원
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7. 한국의류시험연구원
8.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9. 한국전자파연구원
10. 한국화학시험연구원
11. FITI시험연구원
12. HSB-RS 코리아
13. SGS 코리아
14. TUV SUD 코리아
15. TUV라인란드 코리아
16. VDE 글로벌 코리아

③ 중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중국은 정보보안을 목적으로 방화벽 등 관련 13개 제품을 강제인증(CCC)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08.3). 중국 정부와 WTO 차원에서 조치의 정당성, 제정절차의 투명성, 기술정보 유출 등을 문제제기하고, 국제규범에 벗어나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 TBT 중앙사무국은 미국, 일본과 공조하여 중국 정부가 정보보안제품의 강제인증 시행을 전면 보류하도록 함('08.11)

④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강제인증

인도네시아는 소비자보호, 품질제고를 목적으로 철강강판에 대한 강제인증을 도입하였으나, 사전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국내기업은 기한 내에 인증획득이 어려워 수출에 비상이 걸렸었다. 우리나라는 인니 정부와 WTO 차원에서 소비자보호와 무관한 중간재인 자동차용·가전용 강판에 대해서는 강제인증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08.7).

● 인니는 우리측 의견을 수용하여 건자재용에만 적용할 것을 최종 발표('08.8), 자동차용 강판을 주로 수출하는 국내기업의 환인니 수출길 확보

⑤ 노르웨이 소비자제품의 18개 유해물질 사용금지

WTO/TBT 위원회('08.3 '08.7)에서 문제제기하여 DEHP 제외

● 노르웨이는 소비자제품의 DEHP를 제외한 유해물질사용을 금지함

[붙임4] TBT 중앙사무국 (www.TBT.kr) 소개

1. 설립 배경 및 기능

- 목 적 : 한-미 FTA협정 이행합의를 계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규제대응을 위해 3개 부처에 설치한 공식질의처(기술표준원,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를 TBT 중앙사무국으로 통합('08.9.29)
- 역 할
 - 해외수출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지원
 -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수입국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2. 주요 활동

- TBT 포털을 통한 민간-정부간 의사소통
 - TBT 통보문 자동경보서비스 제공
 - TBT 포털 (www.TBT.kr) 가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TBT 포털 가입신청시 원하는 국가·분야의 품목을 선택
 - * 환경규제, 자동차, 가전기기, 기계류 등 65개 품목분야로 분류됨
 - 전자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TBT 통보문 제공
 - TBT 포털내에 TBT 신문고를 통해 애로사항 해결
 - 수출기업 및 수입국 제조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TBT 애로사항 접수창구
 - * 애로접수후 태스크포스를 구성, 현장점검반을 가동하여 신속하게 해결
- 민관 네트워크 협력 강화
 -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통한 민관 의사소통채널 유지
 - 해외현지 기술규제 대응체계 확보(추진중)
- 공식질의처 역할 수행
 - 질의처 업무수행 등을 통한 국내외 기술규제사항 전달 통로

3. 자동경보서비스 이용방법

- TBT 포털(www.TBT.kr)에 접속 ⇒ 하단의 "TBT 통보문 자동경보 서비스 신청"에서 회원가입 ⇒ 관심품목분야 선택
- 지식경제부 TBT 중앙사무국 연락처
 - 전화번호 : 02)509-7254~7257, 전자메일 : knowTBT@kats.go.kr
 - 홈페이지 : www.TBT.kr